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업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4. 3. 19(수)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4. 2. 28
- 나. 제출자 : 인천광역시
- 다. 회부일자 : 2014. 2. 28
- 라. 상정일자 : 2014. 3. 17 (제214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 제안설명 : 김장근 보건복지국장
 - 검토보고 :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질의 및 토론
 - 동의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출산·육아휴직자로 인한 업무공백 최소화 및 경력단절 현상 방지 등 안정적 직무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며,

-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제8조 및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에 의거 시 의회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업명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
- 개소수 : 1개소
- 위탁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

인천광역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대체인력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단체(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¹⁾에 따라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그동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 사용현황²⁾을 살펴보면, 육아휴직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대체인력 수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산전·후 휴가의 경우 생활·이용시설 모두 대체인력의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수급의 격차가 존재하며, 출산·육아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사용 규모는 매년 60~70명 정도임.

1)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제3항 : 시장은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는 자치사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실태조사 및 개선연구, 2013년, 인재개발원

대체인력은 생활·이용시설 모두 ‘단기간/저임금으로 지원자가 적음’의 사유로 인력 채용에 큰 어려움이 있으며³⁾, 대체인력의 채용이 확실시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설장이나 동료직원의 눈치를 살피게 되어 맘 놓고 휴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다차원적 복지후생의 방안으로 대체인력지원센터의 설치 필요하며, 대체인력지원센터 설치 시 활용하겠다는 의향이 이용시설 96.2%, 생활시설 93.3%로 높게 나타났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센터의 설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사기진작을 도모하는데 큰 목적이 있음. 또한, 출산·육아 휴직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복지인력의 경력단절 현상 방지, 대체 인력풀 운영으로 복지인력의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단체(기관)를 선정하여 위탁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3)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출산장려 시책의 하나로 ‘사회복지 대체인력은행’사업을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2011년 10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누적등록인원이 500명, 대체인력 사용인원이 총 32명으로 신청자(시설 요청) 대비 연결비율이 연 80% 정도이며, 대체인력으로 투입되었다가 정규직으로 취업된 인원(7명)도 있어 대체 인력의 부재로 육아휴직을 못하는 사회복지분야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함께 경력단절중인 근로자의 고용 창출의 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도에서는 사업의 성패여부를 확보하고 있는 인력풀로 판단하여 대체인력 지원자(구직자) 발굴에 힘쓰고 있으며, 인력풀의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대체인력은행을 통해 시설에 종사하는 자에게 근무기간 중 매달 최대 10만원씩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음.

※ 동의안 주요내용

- 명 칭 :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센터』
- 운영방식 : 민간위탁 운영 (공모를 통한 수탁자 선정)
- 위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
- 위탁운영시점 : 2014. 4월중
- 운영인력 : 1명 (전담사무원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운영재원 : 58,000천원 (전액 시비, 2014년 예산)
 - 인건비, 운영비, 장비비(컴퓨터, 프린터 등 사무집기)
- 운영조건
 - 운영경비는 매년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하되 관련 사업 추진에 따른 부족 예산은 수탁운영자가 자부담하여 운영
 - 운영에 따른 사무실 등 설치 공간 등은 수탁운영자가 확보 (단, 사무용집기중 예산범위 내에서 일부 지원 가능)
 - 위탁사업 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영 및 제반 관련 법규 준수
- 주요사무
 - 대체인력지원 서비스 (대체 인력지원자 인력풀 운용)
 - 기간제 파견근무자 모집 및 수요기관 조사, 상담업무 등
 - 대체인력 교육, 사업홍보, 간담회 등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 의 >

○ 신동수, 신현환, 강병수 위원

- 그동안 대체인력센터를 어떻게 운영하였는지?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위탁을 받을 만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단체란 어떤 곳을 말하는가?
- 육아휴직과 달리 산전·후의 경우 ‘저임금/단기간’으로 인해 대체인력 채용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것이 대체인력센터를 만든다고 없어질 문제는 아니지 않는가?

< 답 변 >

○ 보건복지국장

- 그동안은 대체인력센터가 없었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복지를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제주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실시함.
시에서는 인력을 지원하고(인건비 보조) 사무실과 기타 부대비 용을 위탁받는 민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큰 예산이 들지 않을 것임.
- 민간위탁 선정 시 수탁능력, 운영실적,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것이며, 사회복지사협회나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신청할 것으로 예상함.

- 육아휴직과는 달리 산전·후 대체인력의 경우에는 거의 초보 사회복지사들의 채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며, 이들을 위한 경력 인정 방안 등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5. 토론요지

- 가. 찬 성 : 박승희 · 신현환 · 강병수 · 김기홍 · 신동수 위원
-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동의(재석위원 5명 찬성 5명)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업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1부. 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업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095
----------	------

제출연월일 : 2014. 2.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제안 이유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출산·육아휴직자로 인한 업무공백 최소화 및 경력단절 현상 방지 등 안정적 직무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며,
-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제8조 및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에 의거 시 의회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 사업명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
- 개 소 수 : 1개소
- 위탁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참고 사항

- 대체인력지원센터 설치·위탁운영 계획 1부.
- 관계법령 1부.

<붙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대체인력지원센터 설치·위탁운영 계획

- ◆ 『201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계획』에 의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사기진작 도모
- ◆ 사회복지종사자의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 최소화 및 경력단절 현상을 방지하고, 복지인력을 원활하게 운용하고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센터』를 설치·운영

I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5조 및 제8조
 -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II 추진방향

-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기관 위탁 운영, 공모제에 의한 운영기관 선정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대체 인력풀 운용으로 복지인력 인프라 및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
- 출산·육아 휴직에 따른 인력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질 저하를 대체인력의 원활한 채용을 통한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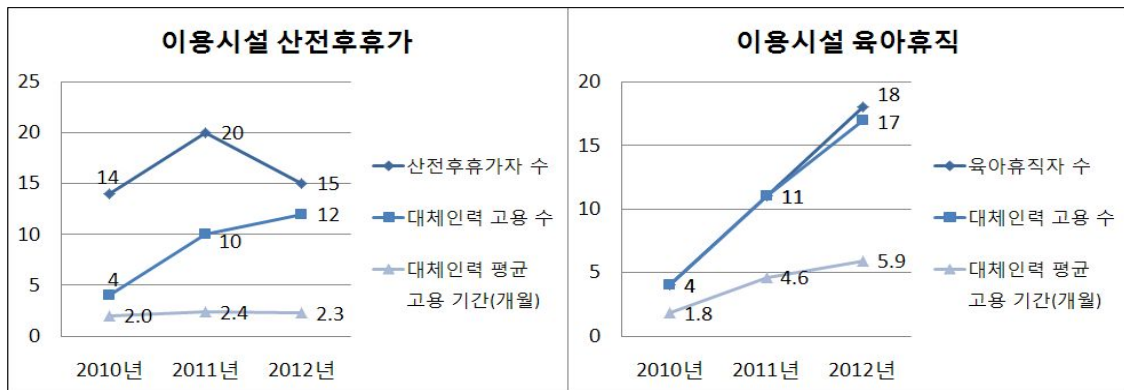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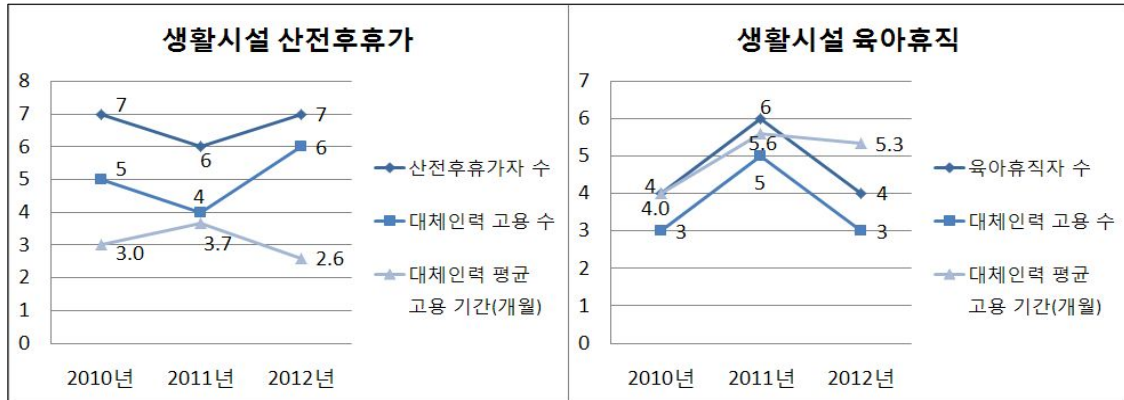
Ⅲ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사용 현황

□ 사회복지시설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시 대체인력 사용 현황

<자료출처 : 2013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실태조사 및 개선연구>

○ 시설의 산전·후 휴직자와 육아휴직자의 수, 대체인력, 고용기간



- 육아휴직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대체인력 수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산전·후 휴가의 경우 생활·이용시설 모두 대체인력의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수급의 격차가 존재함.
- 출산·육아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사용 규모는 2011년 61명, 2012년 62명, 2013년은 70명으로 추정.

○ 대체인력지원센터의 필요성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다차원적 복지후생 방안으로 필요.
- 이용시설은 67.9%, 생활시설은 82.7%가 필요하다고 응답.

○ 대체인력지원센터 설치시 활용 의향

- 이용시설은 96.2%, 생활시설은 93.3%가 활용할 의향이 있음을 응답.

IV

대체인력지원센터 설치·운영 계획

1 설치개요

- 명 칭 :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센터』
- 운영방식 : 민간위탁 운영 (공모를 통한 위탁자 선정)
- 위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
- 운영인력 : 1명 (전담사무원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센터개소 : 2014. 4월중
- 운영재원 : 58,000천원 (전액 시비, 2014년 예산)
 - 인건비, 운영비, 장비비(컴퓨터, 프린터 등 사무집기)

2 주요기능

- 대체인력지원 서비스 (대체 인력지원자 인력풀 운용)
- 기간제 파견근무자 모집 및 수요기관 조사, 상담업무 등
- 대체인력 교육, 사업홍보, 간담회 등

3 위탁조건

- 운영경비는 매년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하되 관련 사업 추진에 따른 부족 예산은 수탁운영자가 자부담하여 운영
- 운영에 따른 사무실 등 설치 공간 등은 수탁운영자가 확보 (단, 사무용집기중 예산범위 내에서 일부 지원 가능)
- 위탁사업 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영 및 제반 관련 법규 준수

V

대체인력지원센터 위탁 계획(안)

1 위탁방식

- 위탁운영자 선정 : 공개모집을 통한 위탁자 선정
 - 근거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 ※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공개경쟁 위탁을 통하여 민간의 전문성 활용 및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 도모
 - 위탁자 선정을 위하여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
- 위탁운영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
- 위탁운영시점 : 2014. 4월중

2 위탁자 선정 계획

- 위탁운영법인 모집 및 선정방법
 - 모 집 : 공고에 의한 희망자(법인) 모집
 - 선 정 : 자체 구성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위탁법인 결정
 -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자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공개모집결과 1개 기관 신청시 별도 재공고하지 않고 심사를 통하여 위탁 여부 결정
- 위탁법인 선정 심사기준
 - 법인수탁능력 및 공신력
 - 법인의 사회복지사업 운영실적

- 시설의 접근성
- 사업계획의 타당성
- 재정운용 및 시설설치 확보 등

○ 위탁운영의 자격

- 인천에 주사무소가 소재하거나 지부가 등기상 등록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 수탁에 필요한 인력, 시설과 장비, 기술 능력이 있는 법인
 - 재정적 부담능력이 있는 법인
 - 책임능력, 공신력이 있는 법인
 - 위탁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수탁관리 실적 등이 있는 법인

3 위탁자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 구성근거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 위원회 구성 : 위원수 7인, 간사 1인

- 당연직 : 1명 (관련공무원)
- 위촉직 : 6명 (시의원, 관련전문가, 시민단체 등)
- * 위원장은 심사위원장 호선으로 선출

구분	인원	선정방법	비고
계	7명		
공무원	1명	사회복지봉사과장	당연직
시의원	1명	시의원 추천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위촉직
관련 전문가	2명	대학교수, 인천발전연구원	"
시설, 단체대표	3명	사회복지시설, 법인, 시민단체 대표자	"
간사	1명	복지기획담당	

○ 민간위탁자 선정심사위원회 운영

- 일 시 : 2014. 3월중 (일정 추후협의 결정)
- 참석대상 : 위원 7명
- 심의방법 :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의거 심사 평가
- 심의내용 : 위탁운영법인 선정

4 배점비율 및 선정방법

○ 배점비율

구분	계	법인수탁 능력	법인의 사업실적	사업계획 타당성	재정 운용	시설설치 확보
배점	100	15	15	20	20	30

○ 선정방법

- 신청법인이 제출한 자료와 법인의 사업계획 발표(질의응답 포함) 자료를 평가하여 채점
- 심사위원 각자가 심사표에 신청 법인별 항목에 점수를 부여하고 항목을 개인별로 합산
- 1개의 법인에 개인별로 부여한 심사위원의 점수를 합산하고 심의위원의 수로 나눈 평균점수를 제일 많이 얻은 법인 선정
 - ※ 단 개인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부여한 심의위원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위원의 점수를 합산하고 나머지위원의 수로 나눈 평균점수를 제일 많이 획득한 법인 선정
-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만 재심의하고, 재심의 결과 다시 동점인 경우 위원회에서 결정
- 신청법인이 단독 응모일 경우 심사결과 평균 70점 이상인 경우 위탁자로 선정

○ 신청법인 사업계획 발표 및 위원질문

- 발표자 : 법인대표 또는 대리인 1명
- 발표순서 : 접수순서 순으로 발표
- 발표내용 : 신청서류 브리핑 및 운영의자비전 제시 등
- 발표시간 : 15분이내(법인발표 : 5분, 위원 질의응답 : 10분)

5 심사발표 및 협약 체결

- 선정결과 통보 : 2014. 3~4월중
- 선정된 위탁법인과 협약 체결 : 2014. 3~4월중

VI 기대효과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하여 직업만족도 향상과 사기진작 도모
- 사회복지인력 인프라 구축으로 사회적 지원체계(안정적 직무환경) 조성

<붙임 : 관계법령 >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훈련 및 교육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변경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①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